예천군의회 공고 제2019-5호

#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3. 22

예천군의회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○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등(안 제3조, 제4조)
  -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,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
  -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실적평가
- 나. 평생교육의 활용(안 제5조).
-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다. 생산품 우선 구매(안 제6조)
  -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 기업,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

및 행정적 지원 가능

- 라. 예산지원(안 제7조)
  -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

### 3. 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『노인복지법』제23조, 『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』제11조

나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·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· (**2**054-650-6407, FAX 054-650-6409)
- · 전자우편(이메일): murayzzang@korea.kr

예천군 조례 제 호

##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제23조와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노인 일자리 창출"이라 함은 예천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예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,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군 산하기관·단체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예천군 노인

일자리 사업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
- 2.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3.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4.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·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평생교육의 활용)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,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생산품 우선 구매)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예산지원)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, 절차 등은「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

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련근거】

#### □ 노인복지법
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